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4,939,876	8,848,196
일반회계	240,395,973	7,211,879
특별회계	54,543,903	1,636,317
공기업특별회계	20,971,292	629,13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971,292	629,139
기타특별회계	33,572,611	1,007,178
수질개선 특별회계	16,118,484	483,5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962,925	28,888
주택사업 특별회계	11,032,586	330,978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71,115	26,133
자활기금 특별회계	1,526,574	45,797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828,555	54,857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25,344	21,76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76,657	14,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30,371	91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47,60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